

##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.

제1조중 "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자금의" 를 "그 자금의 조성과" 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5조를 제3조로 하고, 동조제3항중 "농촌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을 "농촌주택 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" 으로 하며, 제4항을 삭제 한다.

제6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7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"년리 8.0%" 를 "년리 6.5%" 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 를 각각 삭제 한다.

제10조를 제6조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. 세출에 이입 한다.

#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<u>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농촌주 택사업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</u> 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타회계 의 전입금, 보조금, 상환금,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보조금,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 에 대한 대여금(이하 "융자금"이라 한다)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</p> <p>제5조(자금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<u>"농촌개량사업</u></p>	<p>제명 : <u>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 관리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<u>그 자금의 조성과</u> ----- -----</p> <p>삭제</p> <p>삭제</p> <p>제3조(자금운영) ① (현행 제5조 제1항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 제5조제2항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"농촌주택개량</p>

현행	개정안
<p>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"을 체결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    <u>징수관: 건설도시국장.</u>      <u>분입징수관: 주택과장.</u>      <u>수입금출납원: 농촌주택계장</u></p> <p><u>제6조(자금의신청) (생략)</u></p> <p><u>제7조(용자 및 보조조건) ① (생략)</u></p> <p>    ② (생략)</p> <p>    ③ (생략)</p> <p>        1. 이    율 : <u>년리 8.0%</u></p> <p>        2. 상환방법 : 5년거치 15년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u>채증상환</u></p> <p><u>제8조(예비비)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(준용)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</u></p>	<p><u>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"-----</u>  -----</p> <p>삭제</p> <p><u>제4조(자금의신청) (현행 제6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5조(용자 및 보조조건) ① (현행 제7조제1항과 같음)</u></p> <p>    ② (현행 제7조제2항과 같음)</p> <p>    ③ (현행 제7조제3항과 같음)</p> <p>        1. 이    율 : <u>년리 6.5%</u></p> <p>        2. -----  -----</p> <p>삭제</p> <p>삭제</p> <p><u>제 6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</p>